

발명교사인증제 제1회 재인증 시행계획

1. 시행 개요

□ 시행 근거

- 발명교사인증제 재인증(인증갱신) 시행 계획('18. 6)
 - 발명교사인증제 인증 취득 후 5년 경과 시, 별도 보수교육* 실시
(‘13년 제1회 ~ ’17년 6회 발명교사인증제 시행계획 의거)
- * 5년 경과 보수교육, 인증 갱신, 인증기간 연장, 계속 인증 등의 용어를 “재인증”으로 통일하여 사용

□ 시행 목적

- 인증 교사의 지속적 발명교육 활동 장려 및 최신 발명교육 동향 파악을 통한 발명교육 전문성 유지

□ 추진 경과

- 발명교사인증제 도입, 제1회 1·2급 인증 시행('13. 12)
- 1·2급 인증 총 7회, 마스터 인증 총 5회 시행('13 ~ '18)
- * 인증 취득교사 : 총 1,194명(마스터 15명, 1급 96명, 2급 1,083명)

시행 연도	마스터	1급	2급	계
'13	-	56	311	367
'14	5	7	162	174
'15	5	6	154	165
'16	0	17	155	172
'17	1	6	127	134
'18	4	4	174	182
계	15	96	1,083	1,194

- 재인증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논의 및 인증교사 의견 수렴('17. 12 ~ '18. 6)
- 발명교사인증제 재인증 시행계획 수립('18. 6) 및 시행 안내('18. 7~)

2. 제1회 재인증 시행 계획

□ 주요 일정

- 시행 공고 : 2019. 2. 28.(목) 한국발명진흥회 발명교사인증제 홈페이지
- 신청 접수 : 2019. 3. 4.(월) 09:00 ~ 3. 29.(금) 18:00
 - * 온라인 신청접수 시 증빙 서류 파일 첨부하여 제출
- 서류 심사 : 2019. 4. 1.(월) ~ 4. 12.(금)
- 합격자 발표 : 2019. 4월 중순,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 공고

□ 재인증 대상 확인

- (신청 대상) 1회('13년 시행) 인증제 1·2급 인증 합격자 중 재인증 희망자
 - 1회 재인증 실 대상자는 '13년 시행 1·2급 인증 합격자 367명 중, 상위 등급(마스터 및 1급) 취득자 20명을 제외한 347명

* 재인증 대상 : 발명교사인증제 2급, 1급, 마스터 최초 인증 취득 후 5년 경과(예정)자

최초 인증					재인증				
회차	시행	인증등급	검정시험	인증기간	신청시기 (2회)	신청 대상*(명)			인증기간**
						2급	1급	계	
제1회*	13년	1·2급	‘14.01.25	‘14.03.01~ ‘19.02.28	‘19년, ‘20년	311	56	367 (347)	영구 인증 (무기한 연장)

* 제1회 1·2급 인증 : 시행공고 '13년 12월(검정시험 '14년 1월), 인증기간 만료 '19년 2월말

** 재인증 시 인증기간 : 영구 인증(인증기간 대신 발행일만 표기)

- (신청 대상 확인) 한국발명진흥회 발명교사인증제 인증 내역 확인

- 1) 한국발명진흥회(www.kipa.org) 로그인 → (상단) MY KIPA → 사업 신청내역 확인
→ 발명교사인증제 '13년 1회 합격 확인 → 증명서 본인인증 버튼 클릭
- 2) 한국발명진흥회 증명서 발급시스템 → 본인인증 → 발명교사인증제
인증 확인서 발급 → 인적사항, 인증연도, 인증기간 등 인증 내역 확인

* 최초인증 시 예비교원과 재인증 신청시 퇴직교원은 증빙이 가능한 연수 이수실적 및 실무경력 등 선택사항 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재인증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접수 및 증빙서류 제출

- 신청 링크 : http://www.kipa.org/kipa/ip002/kw_hrtraining_1604.jsp

*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 → 지원사업 → IP 인재양성 → 발명교사인증제 → 참여신청

- 온라인 신청서 작성 후 증빙서류는 온라인 신청서에 파일로 첨부하여 제출하며 우편·방문 접수는 하지 않음

※ 증빙 서류(온라인 파일 첨부 필수)

- 증빙서류 원본(원본대조필)을 Scan하여 PDF 파일 2~3개로 각각 탑재
(2급은 ①, ②번 2개 파일, 1급은 ①, ②, ③번 3개 파일 첨부 필수)

① 재직증명서 또는 NEIS 인사기록카드(재직학교 등) 기본정보 부분

② NEIS 인사기록카드 교육(연수)실적 부분 또는 개별 교육이수증

③ 선택 항목의 실적·경력 증빙서류(실무경력, 대회입상지도, 외부강의, 연구특허 실적 등)

○ (인증 수수료) 제1회 재인증 시행 인증수수료 면제

○ (재인증 관련 문의) 한국발명진흥회 발명교사인증제 담당자

- 02) 3459-2745, kipaedu@kipa.org (신청시스템 관련 문의 02-3459-2867)

□ 인증확인서(증명서) 발급

증명서 구분		최초 인증		재인증
인증서 원본	발급 시기/ 회수	인증 합격 후 1회 발급 (원본 우편 발송)		재인증 합격 후 1회 발급 (원본 우편 발송)
	재발급	재발급 불가		
인증 확인서	발급 시기/ 회수	인증 합격 2개월 후 합격자 본인이 온라인 수시 발급(무제한 재발급 가능) (한국발명진흥회 증명서발급시스템 https://cert.kipa.org)		
	인증기간	5년		영구
	인증기간 표기 예	인증기간 유효 시	인증기간 만료 시	영구 인증으로 인증기간 없으며, 발행일만 표기 (예 : 2019. 3. 1.)
		2014. 3. 1 ~ 2019. 2. 28	2014.3.1. ~ 2019.2.28.(만료)	
	인증번호 표기 예	2014-1-1001, 2018-M-5001		(재) 2019-1-1001
	발급 방법	1) 한국발명진흥회(www.kipa.org) 로그인 → (상단)MY KIPA → 사업신청내역 → 발명교사인증제 합격 확인 → 증명서 본인인증 버튼 클릭 2) 한국발명진흥회 증명서발급시스템(https://cert.kipa.org) 인증확인서 발급		

3. 재인증 세부기준

□ 재인증 대상

- 발명교사인증제 2급, 1급, 마스터 최초 인증 취득 후 5년 경과(예정) 자중 희망자

□ 재인증 신청

- 최초 인증기간 만료 해당 연도 및 차년도 2회(인증 만료 후 2년 이내)
 - * 예 1회 1·2급 인증 합격자('13년 시행, '19년 인증 만료)는 '19년 또는 '20년에 재인증 신청 가능
 - * 단, 연말 인증 만료자는 인증 만료 후 2차년도 및 3차년도 신청 시기에 2회 신청 가능

〈최초 인증취득자 인증기간 및 재인증 신청시기〉

연도	구분	시행일 (검정/심사)	인증기간	재인증 신청	재인증 신청 대상				
					2급	1급	마스터	계	연간계 (실 대상)
2013	제1회 (1·2급)	2014. 01. 25	2014. 03. 01~ 2019. 02. 28	2019~2020	311	56	-	367	367 (347)
2014	제2회 (1·2급)	2014. 12. 20	2015. 02. 01~ 2020. 01. 31	2020~2021	162	7	-	169	174
	'14년 마스터	2015. 01. 20	2015. 02. 01~ 2020. 01. 31	2020~2021	-	-	5	5	
2015	제3회 (1·2급)	2015. 09. 19	2015. 11. 01~ 2020. 10. 31	2021~2022	68	6	-	74	165
	제4회 (2급)	2015. 10. 17	2015. 12. 01~ 2020. 11. 30	2021~2022	86	-	-	86	
	'15년 마스터	2016. 01. 20	2016. 02. 01~ 2021. 01. 31	2021~2022	-	-	5	5	
2016	제5회 (1·2급)	2016. 10. 08	2016. 11. 1~ 2021. 10. 31	2022~2023	155	17	-	172	172
2017	제6회 (1·2급)	2017. 09. 23	2017. 11. 01~ 2022. 10. 31	2023~2024	127	6	-	133	134
	'17년 마스터	2018. 01. 20	2018. 02. 01~ 2023. 01. 31	2023~2024	-	-	1	1	
2018	제7회 (1·2급)	2018. 09. 15	2018. 11. 01~ 2023. 10. 31	2024~2025	174	4	-	178	182
	'18년 마스터	2019. 01. 14	2019. 02. 01~ 2024. 01. 31	2024~2025	-	-	4	4	
계					1,083	96	15	1,194	1,194

□ 재인증 기준

- (급별 재인증 기준) 발명교육 이수실적(15시간) 외 최초 인증 자격기준 50% 적용
 - 2급 : 발명교육 이수실적(집합교육) 15시간 이상 이수
 - 1급/마스터 : 발명교육 이수실적(집합교육) 15시간 이상 이수 및 발명교육 실무경력 등 선택 항목별(택 1~2) 최초 인증 대비 50%~25% 충족
 - * 선택항목 1~2개 항목 선택 시 재인증 등급별 인증기준 아래 표 참고
 - 재인증시 검정시험 응시 하지 않음(단, 최초 인증시 검정시험 면제 자동 인증의 경우 검정시험 통과 필수)
- (최초 인증 시 예비교원 또는 자동인증의 경우 재인증 기준)
 - 최초 인증 시 예비교원 2급(발명교육 4학점 이상 이수로 2급 인증)과 2급 자동인증(발명 또는 발명영재 전공 대학원 졸업으로 무시험 2급 인증)의 경우 재인증시 발명교육 이수실적(집합교육 직무연수) 15시간 이상 이수(* 재인증은 자동인증 없음)

〈재인증 등급별 인증 기준〉

등급	공통(필수)	선택항목					검정 시험
	발명교육 이수실적	구분	발명교육 실무경력	발명대회 입상지도	발명교육 강의실적	연구·특허 실적	
2급	발명교육 직무연수 집합교육 15시간 이상 (누적)	해당사항 없음					X
1급		1개 항목 선택 시	1.5년	3건	10시간	70%	
		2개 항목 선택 시	1년	2건	5시간	50%	
마스터		1개 항목 선택 시	3.5년	5건	20시간	150%	
		2개 항목 선택 시	2년	3건	10시간	70%	
	기타 인정 항목		발명 및 지식재산 교육 관련 활동* 20시간 이상 * 발명/지식재산 관련 자문, 심사, 평가 위원 또는 학회·행사 발표, 교육 재능기부				

※ 모든 실적은 최초 인증 후 누적한 실적이어야 함

- (실적 인정기간) 최초 인증 시 인증 취득일(인증기간) 이후 실적
 - * 예) 2013년 1회 인증 취득 시 인증기간이 시작되는 2014. 03. 01 이후 실적 (시행일과 인증기간 사이에 누적한 실적도 인정범위에 포함)

〈재인증 실적 인정 기간〉

연도	구분	시행일 (검정/심사)	인증기간	실적 인정 기간 (확대 인정 범위)
2013	제1회 (1·2급)	2014. 01. 25	2014. 03. 01 ~ 2019. 02. 28	2014. 03. 01 이후 (2014. 01. 25 이후)
2014	제2회 (1·2급)	2014. 12. 20	2015. 02. 01 ~ 2020. 01. 31	2015. 02. 01 이후 (2014. 12. 20 이후)
	'14년 마스터	2015. 01. 20	2015. 02. 01 ~ 2020. 01. 31	2015. 02. 01 이후 (2015. 01. 20 이후)
2015	제3회 (1·2급)	2015. 09. 19	2015. 11. 01 ~ 2020. 10. 31	2015. 11. 01 이후 (2015. 09. 19 이후)
	제4회 (2급)	2015. 10. 17	2015. 12. 01 ~ 2020. 11. 30	2015. 12. 01 이후 (2015. 10. 17 이후)
	'15년 마스터	2016. 01. 20	2016. 02. 01 ~ 2021. 01. 31	2016. 02. 01 이후 (2016. 01. 20 이후)
2016	제5회 (1·2급)	2016. 10. 08	2016. 11. 01 ~ 2021. 10. 31	2016. 11. 01 이후 (2016. 10. 08 이후)
2017	제6회 (1·2급)	2017. 09. 23	2017. 11. 01 ~ 2022. 10. 31	2017. 11. 01 이후 (2017. 09. 23 이후)
	'17년 마스터	2018. 01. 20	2018. 02. 01 ~ 2023. 01. 31	2018. 02. 01 이후 (2018. 01. 20 이후)
2018	제7회 (1·2급)	2018. 09. 15	2018. 11. 01 ~ 2023. 10. 31	2018. 11. 01 이후 (2018. 09. 15 이후)
	'18년 마스터	2019. 01. 14	2019. 02. 01 ~ 2024. 01. 31	2019. 02. 01 이후 (2019. 01. 14 이후)

□ 재인증 절차

재인증 시행 공고 ➡ 대상자 안내 ➡ (온라인) 신청접수 및 증빙서류 제출
➡ 재인증 조건 심사(실적 확인) ➡ 재인증(합격처리) ➡ 인증서 발급

단 계	내 용	주관
① 재인증 시행 공고 및 대상자 안내	[대상자 통보] 신청접수 1개월 전 [재인증 공고] 진흥회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이메일 안내	한국발명진흥회
② 온라인 신청/접수	[접수]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접수 및 증빙서류 파일 첨부 제출	
③ 재인증조건 심사	[서류심사] 등급별 재인증 기준 충족 심사	
(검정시험)	(자동인증) 검정시험 미 응시자	
④ 발명교사 재인증	- 재인증 합격자 인증(인증서 발급) - 재인증 결과 개인 및 시·도교육청 통보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⑤ 인증관리	[관리] 재인증 취득자 DB 구축 및 관리 - 개별 온라인 인증 확인서 발급	한국발명진흥회

붙임

발명교사인증제 재인증 기준별 인정범위

* 인정범위 및 증빙자료 : 최초 인증 기준과 동일(인정 항목만 최초인증과 상이)

○ 필수영역

응시기준		인정범위	증빙자료
필수영역	공통	※ 재인증 인정기간 : 최초 인증기간 시작일(최초 인증 시행일) 이후 실적 인정 * 최초인증 인정기간 : 최근 10년 이내 교육이수 실적 및 발명교육 실무경력 • 집합연수 이수시간 : (공통) 15시간 ※ 원격교육시수는 재인증의 경우 인정하지 않음	
	발명교육 이수실적 (집합교육 15시간 이상)	①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발명지도자 양성 과정 등 교원 직무연수 집합교육 ※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 http://iipi.kipo.go.kr ② 시·도 교육청 주관 및 시·도 교육청 위탁 발명교육 또는 발명영재 교육 집합연수 ③ 한국발명진흥회 종합교육연수원 교원직무연수 또는 특허청·한국 발명진흥회 위탁 발명교육 또는 발명영재교육 직무연수 집합교육 ※ 종합교육연수원 운영 발명교원 직무연수과정 http://www.kipa.org → 지원사업 → IP 인재양성 → 종합교육연수원 ※ 지역별 거점 교·사대에 설치된 발명교사교육센터의 직무연수과정 : 충남대, 부산교대, 전주교대 발명교사교육센터 운영 직무연수	• 교원인사기록 카드(교육실적) 또는 • 해당교육기관 교육이수증명서

○ 선택영역

응시기준		인정범위	증빙자료
선택영역 (2개 항목 이하 선택)	발명교육 실무경력	• 특허청 지정 발명교육센터(구, 발명교실)	• 시·도교육청 교육경력확인서
		• 시도교육청 지정 발명영재학급, 발명영재교육원	
		※ 「주와 부 발명교사」는 동일하게 인정하나, 강사는 불인정	• 학교장 교육경력확인서
		• 일반학교 자체 발명반 및 교내 발명동아리 (50% 인정)	
		※ 1회성 캠프 교육은 불인정	• 임명장 또는 해당 기관 확인서
		• 특허청 청소년 발명기자단 운영위원 (50% 인정)	
	발명대회 입상 지도실적	• 한국발명진흥회 원격교육연수원(아이피티처) 온라인 교원 직무연수 운영강사(Tutor) 활동 (50% 인정)	• 해당 기관 확인서
		• 중앙부처*, 시도교육청에서 주최한 발명대회 수상 *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대한민국학생창의력챔피언대회 ※ 중앙부처 주최 대회의 경우는 시·도교육청 예선대회 수상 실적 포함	• 결과공문 또는 • 상장(원본대조 필 및 지도교사 명시)

응시기준		인정범위	증빙자료
선택영역 (2개항목이하선택)	(외부기관) 발명강의 실적	※ 발명교육 강의실적은 교사, 학부모, 일반인 대상의 강의 • 특허청 발명교육센터의 발명교육 또는 발명영재교육 교사(원) 집합연수 강의 • 시·도 교육청의 발명교육 또는 발명영재교육 교사(원) 집합연수 강의 • 특허청 및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위탁한 대학 등에서의 발명교육 또는 발명영재교사(원) 집합연수 강의 • 한국발명진흥회 종합교육연수원의 발명교육 또는 발명영재교육 교사(원) 집합연수 강의 • 대학/대학원에서의 발명교육 또는 발명영재교육 강의 • 발명교육기관(발명교육센터, 발명영재학급/교육원)의 강의 ※ 사이버튜터, 초·중·고등학생대상 강의 인정불가	• 해당교육기관 강의경력확인서
	발명교육 연구·특허 실적	• 시·도교육청에서 인정 및 선정한 발명연구과제 • 발명교육 연구(시범)학교 결과물 ※ 1인(70%), 2인(50%), 3인 이하(30%) • 특허 등록 건수 : 1건(100%) • 실용신안 등록 건수 : 1건(100%) • 한국연구재단에 등록된 KCI 학회지에 등재된 논문 - 1인(70%) - 2인(주저자/교신저자 50%, 공동저자 30%) - 3인 이하(30%) • 석사학위 (발명교육분야) : 150% • 박사학위 (발명교육분야) : 300% ※ “발명교육분야” 인정범위는 인증협의회 심사를 통해 인정 • 전국교원 발명품 경진대회 수상 - 금상, 은상, 동상, 특별상(70%) - 장려상(50%)	• 시·도교육청 연구과제 선정결과 공문 및 결과보고서 1부 • 특허증 • 실용신안등록증 • 별쇄본 • 학위증명서 • 학위논문 1부 • 상장 사본 (원본대조필)
마스터 기타 인정항목		• 발명 및 지식재산 교육 관련 활동 20시간 이상 ※ 특허청 또는 한국발명진흥회 주최·주관 발명 및 지식재산(교육) 관련 자문, 심사, 평가 위원 또는 학회 및 행사의 발명교육 또는 발명영재교육 관련 주제 발표(또는 패널), 발명 및 지식재산교육 재능기부 활동 참여 기록 * 예) 한국발명진흥회 발명교사인증제 문제출제회의 출제위원 활동	• 해당 주관 기관 확인서, 협조 요청 공문, 운영계획서 또는 위촉장(참여 시간 및 참여자 이름 기재 필)